

##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위원회 규정

제정 2016. 01. 08 개정 2018. 10. 29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경동대학교의 창업교육 학사제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지원하기 위한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.

제2조(임무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.

1. 대학 내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계획 및 추진방안 마련
2. 창업휴학, 창업대체학점 인정, 창업학점 교류제, 창업장학금제 등의 승인
3. 기타 창업교육 학사제도 전반에 관한 업무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기획조정처장, 교학처장, 산학취업처장, 창업지원단장, 창업교육센터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.

② 위원장은 창업지원단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을 받아 총장이 위촉한다.

제4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회무를 총괄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교학처장이 직무를 대행한다.

제5조(임기) 구성원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한다.

제6조(회의) ① 회의는 총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
제7조(결과보고)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회의록에 의거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8조(회의록)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과 작성자인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.

제9조(간사) ① 간사는 주관 부서 직원 중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.

제10조(비밀의 유지)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 중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.